

시민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관한 연구

朴 洪 圭*

I. 머리말

인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공통기준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체계적으로 규정되었고, 그 내용은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부터 발효된 국제인권규약, 곧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하 사회권규약으로 약칭)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하 시민권규약으로 약칭)²⁾, 그리고 시민권규약에 관한 제1³⁾, 제2선택의정서⁴⁾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에 관한 것이고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폐지에 관한 것이다. 1992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사회권규약은 104개국, 시민권규약은 100개국, 제1선택의정서는 60개국, 제2선택의정서는 10개국에 의해 비준되어 있다. 한국은 1990년에 제2선택의정서를 제외한 세 개의 문서를 비준했다(북한은 1981년 사회권규약과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 12월 16일 채택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3, p.3), 1976년 1월 3일 발효.
- 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 12월 16일 채택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9, p. 171), 1976년 4월 23일 발효.
- 3)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 12월 1일 채택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9, p. 171), 1976년 3월 23일 발효.
- 4)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1989년 12월 15일 채택 (United Nations, G.A. Res. 44/128), 1991년 7월 11일 발효.

시민권규약만을 비준했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한국이 비준하지 아니한 제2선택의정서에 관한 연구이다.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는 지구상에서 사형을 전폐함을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지난 역사에서 극형의 상징이었던 사형을 철폐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참으로 역사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형을 철폐하자는 인식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제2차대전종료 후부터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국은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사형이 범죄 발생을 억제시킨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사형폐지를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규정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물론이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생명권은 규정된 반면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하여 규정되지 못했고 단지 이상적인 ‘예외’로 남기게 되었다.

한편 국제연합은 사형이 과연 범죄억제력을 갖는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⁵⁾ 여러 나라에서도 그러한 연구는 계속되었다⁶⁾.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생명권의 불가침성 또는 생명권의 절대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연합의 여러 가입국은 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사형을 폐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유럽, 아메리카, 동구에서는 사형폐지가 거대한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한 조류는 마침내 1989년의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를 놓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곧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의 ‘예외’는 제2선택의정서에서의 ‘금지’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0년대의 산물인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60년대의 산물인 국제인권규약의 80년대 수정을 의미했다. 곧 60년대의 시기상조론이 80년대에 와서 부정된 것을 의미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제2선택의정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5) 그 최초의 보고서는 1962년에 발간되었다. United Nations, *Capital Punishment*,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 publication, 1962, sales No. 62.IV.2

6) 이에 대한 보고는 Amnesty International, *When the State Kills...*, pp. 10-26 참조.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유엔의 목적의 하나인 인권의 존중(유엔헌장 제1조 2·3항)에 찬동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엔이 제정한 조약에 배타적일 수가 없다. 특히 제2선택의정서 제7조 2항은 시민권규약 비준국은 선택의정서를 반드시 비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선택의정서 제6조가 그것이 시민권규약의 추가규정이라고 규정한 탓으로도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조항들이 있다고 해서 한국을 비롯한 미비준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정서는 본조약에 부속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약으로서 본조약의 체약국이 임의로 선택하여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실질적으로는 본조약의 부속 문서이나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다. 그것이 일반조약과 다른 점은 본조약의 체약국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본래 본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 별도의 선택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곧 시민권규약 제6조에서 사형폐지가 이상적이라는 것은 선언되었으나 그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규약과 별도로 제2선택의정서라는 형식으로 사형폐지의 실체법을 규정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그것은 의정서 제6조 1항에 의해, 이미 우리 나라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시민권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국제인권규약을 구성하는 네개의 문서 가운데 세 개를 비준한 한국으로서는 나머지 하나에 대한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2선택의정서의 정식명칭은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제2선택의정서라고 약칭한다. 제2선택의정서의 번역은 이 글의 마지막에 실었다. 한국은 비준전이므로 당연히 정부역이 없고 필자가 임의로 번역했다. 제2선택의정서의 정문은 유엔의 공용어인 중국어⁷⁾, 영어, 프랑스어⁸⁾, 러시아어, 스페인어 외에 특별히

7) 旨在廢除死刑的<公民權利和政治權利國際條約>第二項任意議定書(필자가 簡體字를 본자로 바꿈).

8) Deuxième protocole facultatif se rapportant au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visant abolir la peine de mort.

아라비아어로도 작성되었다(제2선택의정서 제11조). 이는 이슬람지역에 사형존치국이 많은 것을 배려한 탓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번역은 위의 정문 중 영어, 불어, 중국어를 참고한 것이다. 그 세 정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뉴앙스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지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권규약에서의 생명권, 사형폐지의 조류, 사형폐지협약의 성립과정, 동 협약의 내용 그리고 한국에서의 관련문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엮어진다.

Ⅱ.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권규약의 생명권

1. 세계인권선언

나치독일 등 전제주의의 만행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제2차대전후 국제인권법이 라고 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했다. 그 최초의 발걸음이 세계인권선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생명권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라는 극히 간결한 규정을 두었을뿐이다.

국제연합 사무국에 의한 최초초안의 기초과정에서는 사형이 인정된다고 규정되었으나 그것이 국제연합에 의한 사형의 시인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반대에 의해 삭제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을 심의한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소련이 사형폐지를 제안했으나⁹⁾ 유럽과 아메리카 여러 나라가 반대했다. 그 결과 사형에 대한 언급없이 위와 같은 간결한 생명권규정만이 포함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지역판이라고 할 수 있는 1948년의 아메리카인권선언도 생명권만을 규정했고, 1950년의 유럽인권조약은 사형을 명시적으로 용인했다¹⁰⁾. 따

9) 당시의 소련은 사형을 폐지했으나 그후 부활시켜 국제기구에서도 사형폐지에 반대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사형논의에 대해서는 Landerer, Capital punishment as a human rights issue before the United Nations, 4 *Human Rights Journal*, 1971, p.511, pp.515-18 참조.

10) 그 연혁에 대해서는 B. G. Ramchran(ed), *The Right to Life*, Martinus Nijhoff, Dordrecht, 1985, pp. 57-61 참조(이 책은 이하 Ramchran으로 인용함).

라서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엽까지 국제사회의 대세는 생명권의 입장에서 사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권과는 별개로 사형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시민권규약

(1) 연혁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국제연합은 곧 국제인권규약의 기초에 들어갔으나 그것은 18년 뒤인 1966년에 와서야 완성되었다¹¹⁾. 그 사이에 사형에 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으나 특히 1954년과 57년에 국제인권위원회와 국제연합 총회에서 치열한 논전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주로 생명권과 사형이 양립할 수 있는가, 양립한다면 어느 정도로 제약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¹²⁾

사형폐지를 제안한 우루과이와 콜롬비아는, 사형존치가 범죄자의 생생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형벌관에 반하고, 사형에 의해 무고한 자가 처형될 수 있으며, 사형에는 억제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생명권규정에 사형폐지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내법을 이유로 또는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의 위임사항임을 이유로 하여 유럽과 동구 그리고 일본이 반대했다. 다수를 형성한 반대에 의해 그 제안은 사장되었다¹³⁾. 그러나 사형존치가 생명권존중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는 모든 나라가 거의 일치하여 지지했다. 그리하여 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제6조 6항이 삽입되었고 폐지시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동 2-5항에서 사형적용시의 제약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11) 그 연혁에 대해서는 Ramchand pp. 42-56 ; L. Landerer, 주9의 논문 참조. 입법자료로는 Docs. A/2929, ch. vi, paras. 1-10, A/3764, paras. 85-121 참조.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Marc J. Bossuyt, Guide 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참조.

12) Landerer 주9의 논문, p. 518-29 참조. 또 Marc Bossuyt, The death penalty in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Essays on the Concept of a <Right to Live>, D. Prémont ed. 1988, p. 251.

13) 여기서 1962년에 국제연합이 공간한 파리비교법연구소의 마르크 앙셀(Marc Ancel)의 보고서 '사형'(Capital Punishment)이 주목된다. 그 결론은 사형폐지가 범죄발생율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생명권

시민권규약 제6조 1항의 생명권은 의문사, 항존적인 위협으로서의 핵, 화학무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사망, 중절, 생활권, 환경권 등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와도 관련된다¹⁴⁾.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동 2항의 사형과 관련되는 부분만 언급된다. 생명권의 광범한 개념¹⁵⁾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더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3) 제6조의 의미

제6조는 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에 의해 사형폐지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곧 사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형폐지는 생명권의 향수에 전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¹⁶⁾. 그리고 각국의 정기보고서의 심사시에 사형폐지에 대하여 언제나 만족의 뜻을 표명했다¹⁷⁾. 제6조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형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요건을 결여하는 경우 자의적인 것으로 금지된다¹⁸⁾.

14) 시민권규약인권위원회의 일반의견 참조. General Comments 6(16), UN Doc. A/37/40; General Comments 14(23), UN Doc. A/44/40 참조. 일반의견의 성질과 목표에 대해서는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Thirty-sixth session, Supplement No. 40(A/36/40), annex VII 참조. 이러한 광범한 논의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Dominic McGorderick,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published Ph. D. thesis of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1988, p. 523 이하.

15) B. C. Ramchran, 'The concept and dimension of the right to life', in *The Right to Life*, B. C. Ramchran ed., Martinus Nijhoff, Dordrecht, 1985, pp. 1-32 ;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명권은 자의적 살인에 대한 보호로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Y. Dinstein, 'The right to life, physical integrity and liberty', i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Louis Henkin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114-116 at p. 115 ; 또한 Przetacznik는 생명권과 생활권(right to living)을 구별한다. F. Przetacznik, 'The right to life as a basic human right', IX Human Rights Journal, 1976, pp. 585-609.

16) 1982년 7월 27일 제378회 회의(16회기)에서 채택. A/37/40, annex V, at 93-94 참조.

17) 예컨대 A/33/40, para. 341; A/34/40, para. 191; A/35/40, para. 248; A/36/40, para. 51; A/38/40, paras. 229, 300; A/41/40, para. 61

18) Amnesty International, *Political Killings by Government*, 1983, p. 89; A. Wako,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n Summary and Arbitrary Executions, UN Doc. E/CN.4/1983/16, 1983년 1월 31일 paras. 53-55.

(4) 사형부과범죄 - '가장 중한 범죄'

규약은 첫째 '가장 중한 범죄' (the most serious crimes)에 대한 사형만을 인정한다(제6조 2항)¹⁹⁾. 그러나 무엇이 그러한 범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²⁰⁾. 곧 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되었다²¹⁾. 이에 대한 국제연합의 기준은 1984년 5월 25일의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85/50), 사형수권리보호규정(Safeguards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이다²²⁾. 그것은 1982년 시민권규약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일반의견²³⁾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동 위원회는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된다고 했다. 그것에 의하면 '가장 중한 범죄'란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대규모의 생명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의적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동 제1항).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국제적 통념에 따라야 하는 것²⁴⁾이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사형은 강간죄에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위 결의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 범죄에 사형만을 부과하는 것도 과정의 선택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이 소추된 범죄가 가장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규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규약인권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가장 중한 범죄'에 정치적 범죄가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시민권규약은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인권조약 제4조 1항은 사형이 정치적 범죄나 정치와 관련되는 일반범죄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의 부과가 국제관습법의 차원에서도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순수한 신념이

19) 이 문언은 유엔인권위원회 제5차회기에 삽입되었다.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inth Session, Supp. 10(E/1371), annex 1, art. 5.*

20) 아메리카인권조약 제4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21) 총회 제10회기, UN Doc. A/2929, p. 84, para. 6.

22) 경제사회이사회는 1984년의 제1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채택했다. Res. 1984/50 by ECOSOC, G. A. Res. 39/118. 그 본문은 Edward Lawson,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Taylor and Francis 1991, p. 332, p. 1316에 있다.

23)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GAOR, 37회기, Suppl. 40(A/37/40) p. 94; 주21의 책, p. 1299 참조.

24) 일본의 일반적인 해석. 예컨대 法學세미나 1979년 5월호 임시중간 국제인권규약 p. 135 등.

나 사상, 이데올로기, 양심 등에 의한 경우 사형은 부과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사형이 불공정한 재판이나 편파적인 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그것은 명백히 국제관습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규약인권위원회는 재산법의 경우 사형의 부과는 부당하고 그것은 일반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²⁵⁾.

(5) 소급사형과 미성년사형 등의 금지

위 사형수권리보호규정은 둘째, 사형은 그 해당범죄가 범해진 당시의 법에 의해 사형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²⁶⁾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범죄의 발생 이후 법이 개정되어 가벼운 형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후자의 형에 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는 시민권규약 제15조가 규정하는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원칙의 확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권규약인권위원회에 의해 상당수의 사례²⁷⁾가 다루어졌다. 시민권규약 제6조 5항은 18세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을 금지한다. 그리고 위 사형수권리보호규정은 그외에 신생아의 산모, 정신이상자에 대한 사형도 금지하고 있다(제3항).

(6) 시민권규약과의 합치

시민권규약 제6조 3항은 사형이 시민권규약의 다른 규정 및 집단살해죄방지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시민권규약의 다른 규정중에서도 특히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가 중요하다. 제14조 1항은 법원에 의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 제14조 2항은 무죄추정의 권리, 제14조 3항은 재판상의 여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형에 관련된 사례²⁸⁾에서 언제나 언급되어 왔다. 여기서 특히 대량의 사형은 집단살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

25) 33GAOR Supp. 40, UN. Doc. A/33/40, para. 153.

26) Y. Dinstein, 'The right to life, physical integrity, and liberty' in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L. Henkin, ed., p. 18, para. 84.

27) 예컨대 Daniel Monguya Mbenge v. Zaire, Communication No. 16/1976. 1983년 3월 25일 채택. Doc. A/38/40(1983), p. 124. *Selected Decisions*, Vol. 2, pp. 72-79.

여야 한다²⁹⁾.

(7) 적정절차

시민권규약 제14조는 적정절차를 규정한다³⁰⁾. 그리고 위 사형수권리보호규정은 사형이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른 설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4항). 나아가 사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모든 가능한 안전장치, 곧 최소한 시민권규약 제14조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아야 한다(제5항). 그리고 상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제6항). 나아가 사형은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9항).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은 사형의 적정절차를 요구하는 결의³¹⁾를 내리고, 비정상적인 처형에 관한 다수의 특별보고서³²⁾를 작성했으며, 특별한 원칙을 제정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8) 사면 등의 청구권

시민권규약 제6조 4항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인정하고 있다³⁴⁾. 위 사형수권리보호규정도 그것을 인정한다(제7항). 나아가 위 규정은 재심 기타 절차, 사면 및 감형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제8항)고 규정한다.

28) 예컨대 위의 Mbenge case. 또 Earl Pratt and Ivan Morgan v. Jamaica, Communication Nos. 210/1986 and 255/1987. 1989년 4월 6일 채택, Doc. A/44/40, pp. 222-231 참조.

29) GAOR, 12회기, annexes, agenda item 33, UN Doc. A/3764 and Add. 1, p. 36 para. 116.

30) D. J. Harris,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as a human righ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6(1967), pp. 352-378 참조.

31) 결의 2393(XXIII) 1968년 11월 26일, 결의35/172 1980년 12월 15일 등

32) 예컨대 Amos Wako에 의한 보고서(UN Doc., E/CN.4/1983/16: UN Doc., E/CN.4/1988/22; UN Doc., E/CN.4/1989/25; UN Doc., E/CN.4/1990/22).

33) *Principles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1989), 이는 경제사회이사회결의 1989/65에 의해 채택되었다.

34) UN Doc. A/2929, p. 85, para. 9.

(9) 효력의 정지

시민권규약 제6조 5항은 동 제4조의 비상시의 정지(derogation)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³⁵⁾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시에 자의적인 처형이 행해지고 있다^{36).}

III. 사형폐지의 조류

1. 국제연합총회

시민권규약의 채택 뒤에 국제연합총회는 총회결의 1396(XIV), 2393(XXIV), 2857(XXVI, 1971)³⁷⁾, 3011(XXVIII), 32/61(1977)³⁸⁾ 및 결의 35/172(1980)³⁹⁾등을 통하여, 경제사회이사회도 여러 결의⁴⁰⁾를 통하여 사형폐지를 명정했다.

2. 모리스의 보고

시민권규약이 채택되고 난 다음 해인 1967년, 국제연합에 제출된 시카고대학의 노발 모리스(Norval Morris)의 보고서 '사형 - 1961년부터 1965년의 동향' (Capital Punishment: Development 1961-1965)은 살인사건에 대한 사형폐지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 결론은 살인발생율이 일정하거나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우 사형폐지가 각각 그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화 또는 저하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모리스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앙셀보고서와 함께 국제연합사

35) N. Rodley, 'La Pena di morte nella legislazione sui diritti umani', in *La pena di Morte nel Mondo, Convegno Internazionale di Bologna*, Marietti, Casale Monferrato, 1983, p. 153 ff. and in *Rivista di Studi Politici Internazionali*, 199, 1983, p. 436

36) Wako, 주25의 보고서, p. 16 ff.

37) 결의2857(XXVI), 1971년 12월 20일

38) 1977년 12월 8일 채택

39) 1980년 12월 15일 채택

40) 결의 1574(L), 1745(LIV), 1930(LVIII)

무국이 각국에 송부한 조사서(모리스보고서의 경우 75개국의 회답)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후에도 국제연합은 1969-1973(49개국 회답), 1974-1978(91개국 회답), 1979-1983년(64개국 회답)의 5년마다 각국에 조사서를 계속 송부했다. 최후의 것은 1985년에 내부에서 간행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1984년의 결의가 어느 정도로 준수되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는 1987년에 공간되었다.

3. 후드의 보고

1988년 국제연합에 제출된 옥스포드대학의 로저 후드(Roger Hood)의 보고서도 사형에 의한 범죄발생의 억제력을 부정했다⁴¹⁾. 이 보고서는 모리스보고서 이후 23년간 25개국이 사형을 전면 폐지했고, 10개국이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4. 유럽의 태도변화

위에서 보았듯이 유럽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및 유럽인권조약의 채택시에는 사형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가 늘어 사정은 급변했다. 그것은 사형폐지가 흉악범죄의 증가와 무관하다는 인식의 확대, 생명권에 대한 인식의 증대⁴²⁾, 사형폐지에 의한 사형지지여론의 감소⁴³⁾ 등과 관련된다.

41) United Nations, *The ques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new contributions of the criminal sciences to the matter*,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United Nations Social Affairs Divisi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 Vienna, 1988, p. 110. 이 보고서는 1989년 옥스포드대학에서 Roger Hood, *The Death Penalty*로 간행되었다.

42) 단적인 보기로서 독재체제를 극복하고 제정된 1976년의 푸루갈헌법은 제25조에서 생명의 불가침과 사형금지를 규정했다.

43) 1949년에 사형이 폐지된 서독의 경우 1955년에는 55%가 사형을 지지했으나 1986년에는 22%로 떨어졌다.

44) Lidbom, Report on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유럽심의회 의회총회에의 보고서), Doc. 4509, 1980년 3월 18일.

유럽심의회 가맹국 23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22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이어 1983년 유럽심의회 의원총회⁴⁴⁾와 유럽법무부장관회의의 발의에 의해 사형폐지에 관한 제6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⁴⁵⁾. 그 내용은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고 누구도 처형되지 않으나(제1조),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경우의 예외(제2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1조는 법상의 사형범죄를 삭제하는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다⁴⁶⁾. 1985년 3월에 효력을 발생한 그것은 1990년 6월 현재 14개국에 의해 비준되고 있다.

5. 아메리카의 태도변화

1969년의 아메리카인권조약은 사형폐지를 원칙으로 규정했고⁴⁷⁾, 그것을 성립 시킨 아메리카인권전문회의는 같은 해에 회의참가국의 압도적 다수를 얻어 사형 폐지를 위한 선택의정서의 작성을 결의했다⁴⁸⁾. 그러한 경향은 아메리카인권법원 및 동 위원회의 지지⁴⁹⁾를 얻어 강화되었다. 나아가 1980년을 전후하여 사형존치를 고집한 니카라과, 알제리 및 하이티가 사형을 폐지하여 1987년부터 조약안이 검토되고 1990년 6월 조약이 성립되었다. 그 조약도 유럽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전시의 군법위반범죄에 대한 사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아메리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을 존치하는 나라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⁵⁰⁾.

45) Marc Bossuyt, 'International protocol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58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Pnal* 371, 372074 (1987)

46) Nigel S. Rodley,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International Law*, UNESCO, Paris, Clarendon Press, Oxford, 1987, pp. 170-173 (이 책은 Rodley로 인용).

47) 그 연혁에 대해서는 J. Colon-Collazo, 'The Drafting history of treaty provisions on the right to life', in Ramchran, pp. 33-41

48) OEA/Ser. K/XVI/1.2, Washington D. C. 1973, at 467, repr. in OEA/Ser. L/V/III. 10, doc. 13, at 32

49) OEA/Ser. L/V/II 66, doc. 10, rev. 1, at 10

50) Amnesty International, *When the State Kills...The death penalty v. human rights*, 1989 참조.

IV. 제2선택의정서의 성립

1. 조약채택의 과정

국제연합에서의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의 작성은 총회와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제2선택의정서의 경우 최초의 제안은 총회에서 제기되었으나, 그 심의는 총회에서 인권위원회로 그리고 다시 인권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인권소위원회는 조약안을 기초하여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송부한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약안은 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에 앞서 사회, 인도 및 문화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검토된다.

2. 제안과 코멘트

최초의 사형폐지를 위한 선택의정서안은 서독 등 7개국에 의해 제안되었다. 서독에서는 나치스의 자의적 처형에 대한 반성으로 사형을 폐지했다. 서독은 코스타리카와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7개국과 함께 1980년의 제35회 국제연합총회에 제2선택의정서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당시 외상이었던 겐셔(Hans-Dietrich Genscher)의 적극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국제연합은 서독의 제안을 심의하도록 결정하고 각국에 코멘트를 요청했다. 그러한 코멘트로부터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실체론과 절차론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⁵¹⁾. 먼저 사형 그 자체에 대한 실체론적 논의이다. 반대의 선봉이었던 이슬람제국과 일본 및 아프리카제국 등은 살인에 대한 옹보로서의 사형은 이슬람법의 불가분적 일부이며(오만의 주장), 사형에는 억제력이 있고(일본), 인민이 그것을 지지하며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의 생명은 보호될 수 없다고 하는 등이었다.

51) UN Doc. A/37 406, 1982년 9월 30일 채택.

이에 대해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사형은 더 이상 필요없다. 곧 사회의 힘, 특히 사회의 형사, 교육, 교정제도가 지극히 강력하게 된 지금 국가는 그 헌법과 법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범죄통계가 보여주듯이 사형폐지는 범죄발생율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사법과오 및 사형의 남용의 결과 둘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서독, 네델란드). 셋째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로서 존중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려도 결국 사형폐지를 지지할 것이다(플루갈). 넷째 사형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네델란드).

다음 조약화에 대한 절차론적 논의이다. 반대국들은 시민권규약 제6조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사형의 존폐는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 위임되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제안된 의정서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지국들은 의정서는 시민권규약 제6조를 발전시킨 것이고, 그것은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의정서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그것의 선택 자체에 의해 어떤 국가의 의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사형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동향이라고 주장했다.

총회는 1981년과 1982년에 심의를 하고 이 문제를 인권위원회로 송부할 것을 결정했고 인권위원회는 약간의 토의를 거친 뒤에 1984년에 그것을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소위원회(이하 인권소위원회라고 함)에 송부했다⁵²⁾.

3. 인권소위원회

1984년 여름 인권소위원회에서 협약작성이 구상되면서⁵³⁾, 이슬람과 동구측 위원들은 다시 반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이 호의적으로 응하여 벨기에 안트 워프대학 교수인 마르크 보슈이(Marc Bossuyt)위원이 특별보고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1987년의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했다⁵⁴⁾. 보고서는 결론에서, 사형폐

52) E/CN. 4/Sub. 2/1987/20, at 1.

53) E/CN. 4/Sub. 2/1984/SR. 14, 15, 16

54) E/CN. 4/Sub. 2/1987/20, at 1.

지를 향한 세계적 동향이 존재함, 자유권규약은 사형폐지를 바람직한 것으로 봄을 확인하고 제2선택의정서의 초안을 제출했다. 소련측위원의 반대 등으로 1987년에는 의결이 어려웠으나⁵⁵⁾, 1988년에 새로이 임명된 소련측위원 등의 호의적인 태도로 그 초안을 인권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이 무수정으로 결정되었다⁵⁶⁾.

4. 인권위원회의 심의

인권위원회는 1989년 2월 보슈이안을 심의했다⁵⁷⁾. 여기서 알젠틴, 오스트리아, 서독, 폴란드, 스웨덴 등이 선택의정서의 선택적 성격을 강조했고, 특히 소련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곧 그것이 채택되면 소련을 비롯한 사형존치국의 여론 변화에 기여할 것이고, 소련도 곧 그것을 비준하게 되리라고. 그외 반대발언을 한 나라는 극히 소수였다. 특히 일본대표는 시기상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이 동독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제안국에 가담하여 결의안은 가결되어 총회에 송부되었다. 소련이나 동구국가가 사형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은 1.2년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그 변화에는 각국의 국내민주화의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승인

총회에서의 토의 이전에 요구되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승인절차시에 아라비아제국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는 상례적으로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의 결의를 무조건 추인하는 것의 예외였다. 그러나 동 이사회에서는 다수결(찬성 27, 반대 7, 기권 15)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고 총회에 송부했다.

55) E/CN.4/Sub.2/1987/SR. 24, 36.

56) E/CN. 4/Sub. 2/1988/SR. 19-22.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은 원칙적으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나, 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는 다른 요청이 없는 한 결의안 그대로 무투표가결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를 콘센서스에 의한 채택이라고 한다. 그것은 모든 구성원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57) E/CN. 4/1989/SR. 22, 23 and Add. 1.

6. 총회

1989년 말 제44회 국제연합총회에서 보슈이안이 심의되기 전에 다수국이 다시 코멘트했다⁵⁸⁾. 특히 에집트와 중국 및 일본이 반대의견을 서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럽제국을 비롯한 31개국이 제안국으로서 총회의 제3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것은 11월 2일, 찬성 55, 반대 28, 기권 45로 가결되었다.

12월 15일의 총회본회의에서는 26개국이 반대했으나 제3위원회보다 4개국이 많은 54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결의 44/128, 기권은 48개국). 상당수의 국가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특히 몇 이슬람제국)는 사형폐지를 향한 세계적 조류를 설명하는 적극적 요소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곧 사형준치국이 100개국을 넘는 현실에서 26개국만이 반대하고 대부분 기권했다는 것은 사형폐지가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총회에서의 가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유럽과 아메리카제국의 적극적인 주도, 국내민주화로 인한 동구권의 태도변화, 계속적인 각국에서의 사형폐지경향, 보슈이의 탁월한 능력, 엠네스티의 기여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형=범죄억제력이라고 하는 신화의 붕괴, 생명권이념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조류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제2선택의정서의 내용

1. 사형폐지의 의미

제2선택의정서는 뒤에서 보듯이 매우 간명한 조약이다. 곧 전문과 11개조(그중 제7-11조는 최종조항)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사형폐지가 시민권규약 제6조의 생명권을 발전시킨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선택의정서의 핵심은 제1조

58) A/44/592 and Add. 1.

1항에 암축되어 있다. 곧 '이 선택의정서 체약국의 관할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소위 자동적용(self executing) 규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조약을 비준하면 그것은 즉각 효력을 발생하고 국내에서의 사형집행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헌법 제6조 1항).

그리고 제2항은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법상의 사형부과범죄를 삭제하여야 한다. 문제는 사형부과범죄는 인정하되 그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여도 충분한가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1백개 이상의 사형부과범죄가 규정된 나라에서는 점진적인 조치로서 사형조항은 그대로 두되 사형집행정지제도를 고려할 수도 있다⁵⁹⁾. 그러나 그것은 제2선택의정서 제1조 1항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동 2항에는 위반된다⁶⁰⁾.

2. 유보

제2선택의정서 제2조는 유보에 관한 규정이다⁶¹⁾. 이는 한국과 같이 사형폐지에 소극적인 나라를 위한 배려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유보는 첫째 시간적으로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한정되고, 둘째 사항적으로 '전시중에 범해진 군사적 성격을 갖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해 전쟁시의 사형적용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여기서 '전시'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일체의 국제적 무력분쟁을 의미⁶²⁾하므로 내전은 제외된다⁶³⁾. 다음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이란 보슈이안에서는 명확하게 '군법상 규정된'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군법이 없는 나라도 있다는 이유에서 수정

59) 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國藤重光, 死刑廢止論, 有斐閣 1991, p. 186

60) 위의 Rodley의 유럽인권조약 제6선택의정서에 대한 해석 참조

61) 유럽인권조약 제6선택의정서에도 동일한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그러한 예외가 선택의정서에 미리 예정되어 있으나 시민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경우 그것은 유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르고, 따라서 후자의 경우 사형폐지의 원칙은 더욱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전자의 경우 긴박한 전쟁의 위험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나 후자의 경우 전시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예외의 인정범위가 더욱 좁다.

62) Sapienza,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on capital punishment', in The Right to Life, pp. 292 (B. Ramchhan ed. 1985)

63) Rodley, pp. 172-173.

된 것이다. 그 결과 그 개념은 애매하게 되었고 남용의 우려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군사적 성격을 갖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 인가가 규정되지 않으나, 보통 스파이죄, 적전도망죄, 반역죄 등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시민권규약위원회가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3. 정치조치의 금지

제2선택의정서 제6조 2항은 '이 의정서의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의 제1조 1항에서 보장되는 권리, 규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떤 정치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규약 제4조 1항은 체약국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 시에 인권보장의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2항은 제6조의 생명권 등의 정지를 금지한다. 따라서 제2선택의정서도 정치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제2선택의정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2조에 의한 유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실시조항

제2선택의정서의 실시상황을 감시하는 기관은 시민권규약인권위원회이다. 그 비준국은 시민권규약 제40조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보고서 속에 제2선택의정서의 실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제3조). 그리고 국가통보와 개인통보의 절차는 제2선택의정서에도 당연히 적용되며(제4, 5조), 특히 그 통보의 허용성은 권리의 침해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려, 곧 처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2조 2항의 조치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이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면, 이미 시민권규약과 제1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므로 국가통보는 물론 개인통보도 인정된다.

5. 절차조항

제2선택의정서의 기타의 규정은 소위 기술적인 절차적 규정이므로 실체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2선택의정서는 제8조에 의해 1991년 4월 11일, 스페인이 열번째의 비준절차를 마침으로 인하여 그 3개월 후인 7월 11일 발효되었다.

6. 시민권규약 등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선택의정서는 시민권규약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설령 제2조 1항에 의해 유보를 한 나라도 시민권규약 제6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아가 시민권규약 제5조 2항을 통하여 전시의 처형에 관한 국제인도법상의 더욱 관대한 세이프가드⁶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제6조 1항).

7. 절차조항

제2선택의정서의 기타의 규정은 소위 기술적인 절차적 규정이므로 실체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2선택의정서는 제8조에 의해 1991년 4월 11일, 스페인이 열번째의 비준절차를 마침으로 인하여 그 3개월 후인 7월 11일 발효되었다.

64) 이에 대한 관련조약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1949년 8월 12일의 전시의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정 제100-101조

1949년 8월 12일의 전시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 제68, 75조

1949년 8월 12일의 4개 제네바협정 공통 제3조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정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회생자보호에 관한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 제76조 3항, 제77조 5항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정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회생자보호에 관한 선택의정서(제2선택의정서) 제6조 4항

Amnesty International, *The Death Penalty* 21-24(1979)

VII. 제2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사형관계법

1. 사형범죄

한국의 형법은 18개조문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하며, 군형법은 45개조문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모두 50개 이상의 범죄유형에 대해 사형을 부과한다. 그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등이 모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형범죄수는 시민권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형법 제93조(여적죄)를 비롯하여 군형법의 13개 조문은 법정형으로 오직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도 시민권규약에 위배된다⁶⁵⁾.

그러나 한국의 법원은 사형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과 법감정 및 질서와 공공복리의 유지라고 한다⁶⁶⁾.

2. 사형선고

1990년부터 1991년 8월까지 제1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수는 52건이고, 그 범죄는 국가보안법(1), 살인(29), 방화(1), 강도상해치상(1), 강도상해치사(9), 강도살인치사(8), 강도강간(3) 등이다. 사형선고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3. 특별사면과 감형

65) 한국의 사형제도와 국제인권법에 대해서는 Hong-kyu Park, *The Death penalty and Political Killing -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1집 제2권, 1991. pp. 21-52 참조. 또 참고, 사형제도에 관한 법학적 고찰, 엠네스티한국지부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pp. 88-127 참조. 국제인권규약과 한국법의 전체적 조망에 대해서는 Hong-kyu Park, *Human Rights and Law in South Korea*, 창원대학교논문집 제12권 제1호, 1990. pp. 123-134 참조.

66) 대판 1963.2.28, 63도241; 대판 1967.9.19, 67도 988; 대판 1983.3.8., 82도 3248.

한국의 헌법과 사면법 등은 사면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므로 시민권규약에 위반된다. 헌법 제79조는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9호) 형법(제39조 3항, 제82조), 사면법, 형사소송법(제326조 2항, 제372조 2항, 제383조 2항)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1항). 그리고 일반사면(사면법 제2조, 제3조 1항, 제5조 1항, 제8조)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2항).

따라서 사면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되지 않아도 시민권규약에 의해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465조와 제466조에 의하면 사형판결의 확정시 법무부장관은 6월 이내에 형집행을 명령하여야 하고 그 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확정일에 집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심청구권, 특별사면청구권, 감형청구권이 박탈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시민권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되지 않아도 시민권규약에 의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4.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점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고,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가, 사형폐지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폐지에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사형폐지의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수에 있어 전진으로 생각하여야 함을 확신하고,

그리하여 사형을 폐지한다는 국제적 공약을 기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했다.

제1조

1. 이 선택의정서 체약국의 관할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않는다.
2. 각 체약국은 그 관할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1. 비준 또는 가입시에 행한 유보로서, 전시중에 범해진 군사적 성격을 갖는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해 전쟁시의 사형적용을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선택의정서에는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이러한 유보를 한 체약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⁶⁷⁾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유보를 한 체약국은, 그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⁶⁸⁾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선택의정서의 체약국은, 규약의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67) communicate

68) notify

제4조

규약의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⁶⁹⁾을 한 체약국에 관해서는, 당해 체약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별도의 성명⁷⁰⁾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체약국으로부터 다른 체약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통보에 관하여,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확장된다.

제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체약국에 관해서는, 당해 체약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별도의 성명을 하지 않는 한, 그 관할권에 복종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⁷¹⁾를 인권위원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확장된다.

제6조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한다.
2. 이 의정서의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의 제1조 1항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규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떤 정치조치⁷²⁾를 받지 않는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나라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모든 나라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모든 나라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69) declaration

70) statement

71) communication

72) derogation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에 의해 행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열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2. 열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뒤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제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나라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 (a)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명
- (c) 이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d) 이 의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의정서의 효력발생일

제11조

1. 이 의정서는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정문으로 하고 국제연합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나라에 송부한다.